

招請論文

국제 VAN의 동향과 과제

正會員 朴 在 天*

Jae Chon PARK* *Regular Member*

要 約 한미통신협회에서 국제 VAN이 주의 세화 함께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주관청 또는 공중통신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하여 맡진이 저해되어 왔던 국제 VAN 사업이 이제는 국제 VAN 사업을 자유화하지 않고는 국제 네트워크 축면에서 고립된 우리나라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동적으로 전기통신사업을 관광하던 ITU 제세가 UR이라는 보다 진보적인 제세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도 국제 통신사업 자유화의 핵심인 국제 VAN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제 VAN의 자유화는 국제통신사업에 민간 자본을 진출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 정책적 과제를 논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제 VAN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각국의 국제 VAN 협상방향을 분석해 보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노출하고자 한다.

ABSTRACT As IVAN(International VAN) becomes a major topic on the table of Korea-U.S. Telecommunications Consultation, public concern to this area is growing. IVAN service has been dedicated to the business domain of PTT or public telecommunications operator, and its development has been so limited as well. However, the situation is being changed and IVAN liberalization is considered to be essential not to isolate itself from globalized networks. Seeing the fact UR is challenging ITU in facilitating the trad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e worldwide trend of liberalization is apparent. It should be addressed that a clear policy announcement is necessary with regard to the liberalization of IV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case studies of IVAN agreements and to draw policy-oriented issues.

1. 머리말

경제활동이 국제화 함께 따라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국가간 활동은 국제통신 수요를 발전시킨다. 특히 전통적인 전화서비스의 차원을 넘어서 전세계로 뻗어 있는 지사 또는 현지법인 사이의 데이터통신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국제 VAN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일부국가(주로 선진국) 사이의

관심사항에서 벗어나 UR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될 만큼 국제적인 관심사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 7월 1일부터 한·미간에 국제 VAN이 개시될 예정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 VAN과 관련된 국제적 및 국내적 제도의 동향과 함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국제 VAN과 관련된 국제법 체계

국제 VAN도 국제전기통신사업의 일종이므로 국제기구를 통해 설정된 국제적 질서에 적합해야 한다. 현재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기구로는 ITU

*韓國데이터通信(株)
DACOM
論文番號 : 91-27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있으며, ITU의 체계상 두번째 서열의 임명기관으로 업무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s)의 개정이나 주관청회의와 관련된 세계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세계 주관청회의에서 제정된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¹⁾과 자문기구인 CCITT에서 발간되고 있는 권고안에 의하여 국제전기통신사업의 국제적 질서가 수립되었다. 전기통신관련단체는 아니지만 UR에서도 서비스사업 개방의 핵심으로 국제 VAN 서비스의 전세계적인 개방을 논의하고 있다.

2-1 국제전기통신 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국제 VAN 사업은 전통적인 국제전기통신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져 정부나 주관청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루어져 왔다. 국제법체계상 이러한 개념이 바꿔져 된 것은 1988년 세계주관청회의(WATTC-88; World Administrative Telegraph and Telephone Conference 88)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을 제정한 이후였다.

이 규칙의 제정배경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통신기술과 신규통신 서비스의 출현 그리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 등 새로운 사태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화규칙과 전신규칙⁽²⁾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국제전기통신 규칙의 제정을 둘러싸고 국제통신의 자유화 및 규제해제를 주장하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네델란드·덴마크 등과 규제지속을 원하는 프랑스·스페인·동구권·캐나다 등이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양 진영에서 대립하였던 사항은 미국이 제안하였던 특별약정(Special Arrangements)에 관한 것이며 그 대상은 국제 VAN 서비스였다. 이 특별약정조항은 ITU체재가 전통적으로 만장일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데 반하여 이해 당사국들간의 쟁의 협정만으로도 국제전기통신 문제에 관한 특별약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이 조항을 삽입하려 했던 배경은 ITU의 모든 조약 및 규칙들이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VAN 서비스 개방을 위하여서는 ITU의 의사결정 과정을 되풀이 하는 것보다는 이해관계가 맞는 관련 당사자들끼리의 협약을 통해 개방을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특별약정 조항에 따라 미국·일본·영국·캐나다등 선진 통신국가들은 국제 VAN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국간 협약을 추진하여가고 있다. 현재 한·미간에 추진되고 있는 국제 VAN 협상도 이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양국간 협상이다.

특별약정 조항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국내법에 의하여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RPOA:Recognized Private Operations Agency)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이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하여 허락된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 기타 기관 또는 개인과 전기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화규칙 및 전신규칙에서는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주관청과 인정된 사기업으로 제한되었으나, 국제전기통신 규칙에서는 사기업까지 확대되었다. 국제전기통신 규칙은 전반적으로 각국의 국제전기통신 규제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약정을 적용한 것은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발달, 특히 국제 VAN 서비스의 발달은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상태에서 촉진될 수 있다는 일식에 근거를 둔 것이다.

2-2. CCITT 권고 D.1

ITU의 자문기구인 CCITT (Comite Consultatif International Telegraphique et Telephonique)의 권고는 국제전기통신규칙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의 회원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표준 및 운영규칙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CCITT 권고는 시리즈 A에서 Z까지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D시리즈 권고는

일반요금원칙을 정한 것으로써 국제전용 회선(leased line)의 일반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국제VAN 사업의 자유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제VAN의 실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D.1권고로서, 이 권고는 국제 전용회선을 임차한 고객에 의한 전용회선의 재판매와 고객이 지정하는 이용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D.1권고에서는 국제전기통신의 주체로서 주관청 및 인정된 사기업(RPOA)만을 인정하고 있다. D.1권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RPOA로 지정받은 한국전기통신공사 그리고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만 국제전기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D.1 권고에서는 전용회선의 이용은 고객 본래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용자 이외의 제3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득을 취하는 것, 즉 국제VAN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단지 전용회선을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여 Remote Computing Services를 제공하는 것이 예외로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메세지 교환, 축적 전송등의 국제VAN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중망(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데이터통신의 국제 교환망)을 사용해야만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다국적기업 및 국제화된 세계경제가 필요로 하는 국제VAN 서비스의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CCITT의 SG III(Study Group III)는 지난 3월 13일 국제전용 회선사용에 관한 D.1권고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 개정안⁽³⁾은 공동사용과 제3자에 대한 전용회선 재판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어, 국제전용네트워크 분야(즉 국제VAN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이 예견되고 있다. 또 이전에 있었던 이용제한사항을 모두 없애고 국내법하에서 구체적인 규칙이 제정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D.1 권고의 수정안의 채택은 미국의 CCITT SG III 대표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서 재판매 및 공동사용을 철폐하여 국제VAN은 활성화시키려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 개정에 따라 각국은 국제전용회선 사용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로써 CCITT 권고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규제적인 D.1 권고의 포기는 현재 여러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방적인 정책변화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또 이 개정은 국내VAN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국내규제를 완화하려는 국가들에게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근거를 제공하여 개방추세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 UR과 국제VAN

UR협상은 GATT 체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무역의 보호주의화 및 지역주의화 경향을 방지하고자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회원국 각료회의에서 시작되었다. UR협상의 최고협상기구인 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 산하에는 GNG(Group of Negotiation on Goods)와 GNS(Group of Negotiation on Services)의 두 협상그룹이 있다. GNS에서는 모든 서비스 무역에 적용될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제정하려 하고 있으며, 여기에 통신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UR 협상은 출발이후 각국으로부터의 문서제안 접수를 통한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회사의 설립, 상업적 주체, 노동력이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 내국민 대우 등 주요 원칙의 적용, 개발이념의 수용등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차이로 논란이 벌어졌다. 1988년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타개하고 향후 협상추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각료급 무역협상 위원회(TNC)가 개최되어 이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통신서비스는 GNS에서 제정될 일반협정을 효과적으로 각 서비스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공감대가 회의를 거듭하면서 형성되었다. 특히 1990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GNS회의에서는 일반협정을 특정서비스 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석, 명료화하고 추가설명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금융, 교통등의 분야와 함께 통신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를 재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속서 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의 소집이 합의되고 1990년 8월까지 미국, 일본, EC, 한국 및 호주가 부속서 초안을 제시했으며 카메룬, 에집트, 인디아 및 나이제리아 4개국은 공동으로 부속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통신이 서비스 일반화의 적용을 받는 독립분야인 동시에 여타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수단 또는 기반구조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서비스교역 자유화의 틀 속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주요 토의 대상이었다. 선진국 진영에서는 통신 서비스가 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송방식(Underlying Transport Mode)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접근이 허용된 모든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동적인 기본통신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통신 부속서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미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s)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을 주용내용으로 하는 통신부속서⁽⁴⁾를 최초로 독자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반대와 기업내 통신 및 지배적 민간사업자(미국의 경우는 ATT)에 대한 의무등의 사안에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는 2차 회의시 통신사업과 이용의 공동규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독자적 통신 부속서를 제출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도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4차례의 결친 공식회의와 비공식회의에도 불구하고 통신부속서 재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개도국으로부터 새삼 제기되었고 부속서가 재정되는 경우 담겨져야 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의장 직권에 의한 초안이 의장 보고서의 형태로 GNS에 제출되었다. 의장이 직권으로 GNS에 제출한 부속서 초안은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의 이용조건은 명묘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비자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기업내 통신을 위한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의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UR 체제하에서의 독립된 분야로서의 통신서비스의 개방범위 및 시기는 양허계획서(Offer List)를 기초로한 양허협상을 통하여 확정된다. 이 양허협상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시한 국제 VAN 서비스의 개방범위 및 시기⁽⁵⁾는 다음과 같다.

개 방 범 위	시 기
온라인 DB, RCS 서비스	91년 7월
메세지 교환, 축적 전송 등	91년 7월
데이터 단순전송 서비스	91년 7월
합자 투자 50%까지 인정	91년 7월
외자 세한 폐지	94년 1월

UR 협상에서는 ITU 체제와의 관계도 논의되었다. UR 체제에서 정의하고 있는 양체제의 목표 또는 접근방법의 차이를 보면,

첫째, ITU는 세계기간통신망의 기술적 효율성 재고와 안정적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GATT내의 GNS는 세계교육 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통신망의 이용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 ITU가 연동성과 상호접속을 증진하는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국가간의 합의에 의존하고 이 권고표준은 자발적 구속력(self-enforcing power)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GATT는 기본원칙과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ss)에 의존하고 있다.

3. 국제 VAN의 쌍무협상의 동향

CCITT의 D.1 권고등에서 기술되어 있는것과 같이 국제 VAN서비스는 WATTC-88 회의 이전까지는 국제적인 호응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세계적인 통신산업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은 관리당사자간의 쌍무협상을 통하여

국제VAN서비스를 개방하여 나갔다.

WATTC-88 회의에서 이러한 쌍무협상이 특별약정의 형태로 인정되자 최근에는 각국에서 너도나도 쌍무협상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추세에 발맞추지 않는다면 국제 VAN에 관한 한 고도의 위치에 빠질 염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벌이고 있는 미국과의 쌍무협상이 이러한 배경위에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1. 미-일 협정

미국과 일본은 1987년 3월에 국제 VAN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1987년 9월에는 양국사이에 합의된 각서에 기초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각서에 의해 미일간의 국제VAN 서비스는 코드, 포맷, 프로토콜변환, 메세지축적·교환서비스에 한해 허용되었으며 음성, 텔레스, 팩스 및 단순재판매는 불가능하였다.

이 허용범위는 1990년 8월 1일에 일본 우정성의 미스오 이가라서 차관과 미국 무역 대표부의 린 월리암스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확장됐다.

1) 기본음성, 기본 텔레스, 기본 FAX 및 단순재판매를 제외한 모든 고도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음성사서함과 고도 FAX 서비스도 포함된다.

2) 미국식의 기본, 고도서비스 구분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서비스와 고도서비스가 결합되는 서비스는 고도서비스로 간주한다.

미국 FCC가 1980년 채택한 제2차 컴퓨터조사에서 고도서비스는 “사용자의 전송정보의 포맷, 내용, 코드, 프로토콜 등을 변환하거나 저장 관리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서비스”로 정의되어 있다.⁽⁶⁾

3) 국제전용회선의 기업내통신과 공동사용의 제한을 완화하여 동일 회사내 또는 10% 이상의 지분관계에 있는 회사간 통신에 대해 공·전·공 접속을 허용한다.

4) 상대국의 합의없이도 제3국과의 국제VAN

서비스를 인정한다.

3-2. 미-영 협정

미국과 영국 간의 국제VAN에 관한 협정은 비록 1년여가 걸렸지만 양국간의 유사한 문화및 전통적인 우호관계로 인하여 매우 간단하게 완료됐다. 1988년 7월 영국의 무역산업부, 통신체신국장 R.J. 프리들과 미국 국무부 국제통신 및 정보정책국장 파크 W.보그가 교환한 서한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의 국내 부가가치통신업자들에게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어떤 서비스나 목적에도 국제전용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에서 허용된 부가가치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양국사이의 국제VAN 서비스의 일종으로 제공되게 되었다.

3-3. 일-영 협정

1988년 5월에 일본 우정성 사업국 하루케 마스오 국장과 영국 상무부의 통신체신국장 R.J. 프리들에 의해 체결된 일본-영국간 국제VAN 서비스 협약은 미-일간의 체결된 협약보다는 간단하고 미-영간에 체결된 것보다는 상세히 기술되었다. 이 협약에 의해 1988년 11월부터 제공 가능하게 된 서비스는 변환기능을 포함한 축적·전송과 코드변환, 포맷변환 또는 프로토콜변환이 있는 서비스등이다. 반면 음성, 텔레스, 팩스 및 단순재판매 서비스는 불허했으나 고도팩스서비스에 한하여 1989년 11월에 추가로 허용됐다.

3-4. 기타국들의 협정

상기에 소개된 3국간의 3개 쌍무협정 이외에 현재까지 미국-홍콩간, 일본 카나다간, 일본-프랑스간의 국제VAN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를 협약에 의하여 개방된 서비스이 범위들은 앞에서 소개된 미-영-일간의 협약에서 설정된 개방범위와 대동소이 하다. 특기할만한 것은 일본-프랑스간에 체결된 협약으로서 데이터통신의 단순재판매(패켓교환 또는 회선교환서비스 등)가 허용되지 않다. 이는 프랑스가 EC국가들중 전기통신

개방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보수적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4. 한미간 국제VAN서비스 협상 동향

한미간의 통신관련 쌍무협상은 미국이 1988년 말 한국에 통신시장 개방을 종용하는 내용의 non-paper를 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우리나라가 1989년 2월에 PFC(Priority Foreign Country)로 지정되어 직접적인 미국의 압력을 받아왔다. 국제VAN서비스도 이 협상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체신부의 국내 부가가치통신 서비스 개방 우선정책에 의해 타결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국제VAN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은 올해 1월달이다. 정부는 1월15일 UR서비스 협상과 관련 국제VAN서비스 시장개방내용을 포함하는 국내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최초 양허 계획서(Initial Offer List)를 제출하였다.

최초 양허 계획서란 서비스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지를 담은 분야별 개방의사 표현이다. 최종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운과는 최초양허계획을 기초로 하여 주요통상국가와 쌍무적 협상을 벌여 확정된다. 국가별 양허협상방식은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와 쌍무협상을 벌여 이 결과를 가지고 2, 3위 국가들과 협의를 거친다음 나머지 국가들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위치에 따라 확대 적용하는 것이 관례이며 UR서비스 협상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UR 양허협상과 병행하여 지난 2월 한국과 미국은 통신관련 쌍무협상에서 7월부터 국제VAN 서비스를 개방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4월부터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한미간의 국제VAN협상에서는 이미 개방시기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제VAN서비스의 정의 개방범위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5. 국제VAN의 법제현황

국제VAN이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83년 데이터통신에 의해 Dialog DB서비스가 소개되면서부터였다. 국내에서도 체신부가 DB, DP서비스를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이라는 산업분류로 1985년 민간업자에게 허용하였다⁽⁷⁾. 국제VAN 서비스는 데이터통신분야의 전담 공중통신사업자인 데이터통신의 독점 영역이었다. 법상으로 민간업자들이 국제VAN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었지만, 민간부문에서 국제VAN 서비스를 할려는 시도도 없었다. 1985년 1월 체신부는 1985년의 고시를 개정하여 민간사업이 제한적으로 국제DB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언론사 등 공인된 정보처리기관만 공중망을 통하여 해외 DB제공이 가능하였다. 이 조치로 연합통신이 Reuter정보서비스를 매일 상세신문이 나레이 DB를 또 중앙일보가 Dow Jones DB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989년 체신부는 제3차에 대한 통신매개서비스를 포함하는 제4차 VAN서비스 개방이라고 불리우는 조치를 단행했다.⁽⁸⁾ 이 조치에 의하여 명목상으로는 공중망을 경유하여 본격적인 국제VAN 서비스가 허용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EDI, E-MAIL, CRS 및 DB / DP 등이 국제간 공중망을 통해 허용됐다. 이때 외국인의 소유지분은 1985년 조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50%까지 허용됐다. 그러나 국제VAN사업을 국제전용선으로 통신망을 구축하여 어떤 VAN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한 본격적 비지네스라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제VAN 서비스가 민간부문에 개방되어 있지 않다.

6. 국제VAN관련 과제

6-1. 국내법체제의 정리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산업을 관掌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는

VAN사업을 정보통신역무제공업으로 칭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역무 제공업자는 공중통신사업을 경영하는자의 전기통신화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 정보통신역무는 제2조에서 공중전기통신 역무중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정보통신설비를 타인의 정보통신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보통신역무제공업에 허용된 서비스에는 국내 또는 국제라는 구분이 없다. 또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구분이 없다. 따라서 국제VAN서비스가 금지되어있다는 조문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다. 현 법제는 단지 국제VAN 서비스라는데 대해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현 법제가 1983년 12월에 제정되었을 때는 국제VAN이라는 용어가 생소했기 때문이었지 않나하고 생각된다.

최근까지도 VAN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서비스가 공중통신사업자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VAN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현 법제제하에서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이 개방됨에 따라 국제VAN서비스도 자동적으로 개방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공중전기통신 사업법 제73조 11항의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준용 규정에서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등은 공중전기통신 사업법 제8조의 체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국제VAN이 민간사업자에게는 가능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가능하였다.

한-미간의 국제VAN협상에서 국제VAN서비스의 개방이 합의된다면 현 법제계가 비로써 싸임새 있어 질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VAN서비스의 개방범위 또는 VAN서비스의 정의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역무제공업과는 다르게 정해진다면 현실적으로 국내와 국제 VAN은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국제에 전혀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 현 법제계가 잘 짜여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한-미간의

국제VAN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국제VAN을 특별2종으로 분류하는 일본식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6-2 국제VAN의 개방범위 및 정의

앞에서 예시한 쌍무회담에서 대표적인 것은 영미식 협상과 미일식 협상을 들 수 있다. 영미식 협상에서는 국제VAN을 국내VAN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다. 따라서 국제VAN에 관한 합의문도 2Page의 편지로 대처됐으며 그 내용도 단순해서 양국내에서 허용된 서비스는 양국간에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양국이 공통적으로 전기통신산업을 미국 국제적인 산업으로 인식하는데 따른 것이며, 양국의 전기통신정책 자체가 국내 국제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일간의 국제VAN 협정에서는 VAN서비스의 정의 그리고 양국간 국제VAN서비스의 개방범위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VAN서비스의 정의는 주로 미국식의 기본, 고도서비스(basic and enhanced services)의 분류방식을 따랐다. 또 개방범위도 주로 미국의 고도서비스 범위에 맞추어졌다. 일본의 통신사업관리제도에서는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기준은 회선설비의 보유 유무이다⁽⁹⁾. 이 같은 분류기준은 미국식의 기본/ 고도 분류기준과는 활이하게 다르다. 일본의 제2종은 미국의 부가통신보다 범위가 넓다. 따라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통신협상을 벌이는 일본은 미국식의 분류기준과 contranination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같은 분류 기준이 합의문안에 상세히 기술돼 있다. 허용범위도 미국분류의 고도통신범위와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역무제공업도 일본의 제2종 통신사업과 비슷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물리적 회선설비를 소유하지 않고 전용선을 임차해 네트워크 구축해 주로 데이터통신을 영위하는 사업을 칭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국제 VAN협상을 벌일때는 영미식보다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정의 및 국제VAN서비스

개방범위를 비교적 엄격히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미·일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6-3 국제 VAN 네트워크의 확장

한미간에 국제VAN서비스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게되면 한미간에는 이 협정에서 기술된 내용의 서비스가 상호 호혜적으로 허용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과의 경쟁력 측면에서 생각하면 미국의 국제VAN기업들이 월등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영국, 카나다, 일본, 홍콩 등지로 쌍무협정을 체결하여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 이외의 국가와는 협정체결이 안 되 있으며 따라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많은 지역(Destination)을 연결하고 있는 미국이 네트워크의 외부효과적인 측면에서 월센 유리하다.

미·일간의 국제VAN 서비스 협정서에는 양국을 경유해서 제3국으로 연결되는 것은 미·일간에 인정되는 서비스이고 제3국이 이 서비스를 반대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내용이 한·미간의 협정에도 삽입되면 미국은 한국과 비교할 때 통신 Hub 국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미국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제3국으로 중계할 수 없는 형편임에 반해 미국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통신수요를 이미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통해 얼마든지 제3국으로 중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일본, 카나다 등지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한미간의 국제VAN 협상이후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와 신속히 쌍무협정을 확대하여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6-4 공정경쟁의 확보

기본통신사업자는 부가가치통신사업을 할 경우 순수하게 부가가치통신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보다는 우월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부가가치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회선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통신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통신망을 직접 소유·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트래픽정보, 가입자정보 등에 있어 월등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ONA(Open Network Architecture) 프로그램 및 회계분리 등과 같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¹⁰⁾. 미국기업들은 이같은 공정경쟁 환경에 익숙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같은 법제도장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미국기업들이 한·미간의 국제VAN 협상의 타결을 시발로 한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벌이는 경우 자국내에서 경험하였던 것보다 훨씬 불합리한 법제도하에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토에 지나쳐서 한국적인 법제도 환경이 고의적으로 미국기업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오해를 살 염려도 있는 것이다. 미·일간의 국제VAN 협정에서는 이같은 문제도 다루고 있다. 기본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정경쟁 장치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기본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소한 회계분리를 준수해야 하며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종 사업자의 회계규칙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한·미간의 국제VAN 협상에서 미국 측은 이같은 공정경쟁 장치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또 협정이 완결된 후 더이상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공정경쟁 장치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6-5 기업내통신과 공동사용

이 과제는 국제VAN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항상 같이 거론되는 것이다. 국제VAN 사업자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통신사업자에게 국제전용회선을 빌려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VAN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데 비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뿐 국제VAN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생산·사용하는

목적으로 국제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내 사용이다. 공동사용은 양자가 양자간의 목적만을 위해 국제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에 체결된 미·일간의 국제VAN 협정에는 이같은 회선사용상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내용은 1987년의 미·일 국제VAN협정에는 빠져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미·일간의 국제전용회선을 양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사, 자회사, 그리고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협력사들과의 통신에 사용하려 했다.

이를 위하여는 국제전용회선 양단에 공중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owrk)을 연결하는 것이 필수과제였다. 한편 일본은 국제VAN 사업자에게 회선을 제공할 때 “약관외역무”라는 조항⁽¹¹⁾을 신설하여 해결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업내통신 및 공동사용에 전용회선을 이용할 근거가 없다고 맞서왔다. 1990년 미·일간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내통신 및 공동사용의 목적으로 국제전용회선을 공중전화망(PSTN)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단순 재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기업내통신은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 전용회선을 기업내 음성, 데이터, 화상통신 및 정보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를 비계열회사에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기업내통신이라함은 동일기업 또는 10%의 자본관계를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간의 통신을 말한다.

- 그룹내의 한기업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계열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공동사용이라함은 10%이상의 자본 소유관계에 있는 두 기업간, 거래총액의 20%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인 협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기업간의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이 1990년 7월 UR 통신전문가 회의에 제출한 부속서 초안의 설명서에⁽¹²⁾ 의하면 기업내

통신(intracorporate communications)은 동일기업 내는 물론 관련기업(affiliates)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또 2차 전문가 회의에서도 기업내 통신이 지점(branch), 자회사(subsidiary) 및 관련업체(affiliate)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제3자(the third party)에 이윤을 목적으로 제공되어지는가 하는 기준 역시 여러 형태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임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기업내 통신에 관한 무제한적 이용보장은 공중통신 사업자의 수입원을 잠식하여 공중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인상하게끔 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우리나라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제73조, 제74조에서 정보통신용회선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 2항 2호에 의하면 “국제투정통신회선의 경우에는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상호간”에는 특정통신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한미간의 국제VAN에 관한 협의에서 기업내통신이 같이 논의될 경우 양국간에 합의된 기업내통신 허용범위는 바로 이 조항에 의해 체신부장관과의 고시로 풀려질 수 있다. 기업내통신 및 공동사용의 범위는 한·미간의 국제VAN협상에서 앞으로 정해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미·일간의 협정과 같은 범위가 허용된다면 음성통신 및 공·전 공 접속이 허용되게 된다. 이 허용범위는 국내·정보통신역무제공업에도 아직 허용되지 않은 범위다. 따라서 이 분야가 국제에 먼저 허용된다면 정부가 이제껏 준수해왔던 전국내 개방원칙에 저해되는 것이다. 한미간의 국제VAN 협정의 내용이 미·일간의 협정내용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되는 바 국내에서도 이같은 기업내통신 및 공동사용 범위 확대가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Telegraph and Telephone Conference (WATTC 88) in final Acts of the World Administrative MEL BOURNE, 1988.
2. ITU,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Final Acts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Nairobi, 1982.
3. Draft Revision of Recommendation D.1, CCITT / CIRCE (59E), IXS
4. Communication from the U.S., GATT SECRETAR IAT, MIN, GNS / W : 97, 23 March 1990.
5. UR 사이버 유통 영역 개화 보고서, 한국정보보, 1991.1.16.
6. 조용경, 국제 VAN의 최근 동향 및 전망, 통신정책학회, 통신개방 연구원, 1991.3.
7. 세신부, 고시 제45호, 1985.1.23.
8. 세신부, 고시 제51호, 1989.6.22.
9. 일본 우정성, OPEN Telecommunications Market of Japan, 1989. 3.
10. 오명진, 백의진, 주요 선진국의 최근 전기통신정책동향 – 자유화 및 경쟁도입 정책을 중심으로-, 주간기술동향(362),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
11. 조재 VAN 주관 김남희, 사단법인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협회, 상설 국제 VAN: 서비스와 활용, 일간 종합신문사, 1990.8, P110.
12. US,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nex Objetives (1990.7), UR / GNS 통신부속서 관련 자료집, 통신개방연구원, 통신개방 연구단, 1991.3.



朴 在 天(Jae Chon PARK) 朴在天
1952년 3월 8일
1975. 2. : 서울공대 졸업, 학사, 총용수학
1975.3~1981. 8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원인원 과학, 체스엔
무역
1982. 3. : 미국 조지아공대 졸업, 석
사, O.R.
1986. 6~현재 : 한국네이티브신 주식
회사 전략 기획부장

연구활동

- 1988 : Growth and Telecommunications :
A Two Sector Model for Telecommunication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Jaechon Park,
Aug. 1988.
- 1989 : 대안(D) 통신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재천, 차인
숙, 통신정책학회, 1989. 가을, 제4권 3호, 통신개
방 연구원
- 1990 : The Contribution of Telecommunications Sector

to Economic Growth, Jaechon Park,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6, No 1, Summer 1990, P217-241.

- 1990 : 통신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일고
– 기본통신분야를 중심으로, 박재천, 통신정책연
구, 1990. 가을,
제5권 3호, 통신개방연구원
- 1990 : Market Opening Direction and Regulatory Issues of International VAN in Korea, Jaechon Park, International VAN and National Economy Vol 2, proceedings of KISDI International Conference II, Oct. 1990.
- 1991 : Restructuring of Korean Telecommunication Industry, Jaechon Park, in Proceedings of PTC '91, Jan. 1991.
- 1991 : 전기통신산업에 시의 기술 및 시장규모와 규제수준
에 관한 개설, 한인근, 박재천, 한국통신학회 논문
집, 제16권 3호, 1991. 3.